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7누77]

사건명 : 직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 원고

부산 사하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1

피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론종결 : 2018. 7. 4.

판결선고 : 2018. 8. 29.

##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게 한 직무상 질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이하 생략생)는 2016. 4. 20.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 이 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관장(5급기관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2. ○○수산의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구성된 총 6척의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근해에서 고등어 등을 어획하는 ○○○○어업의 운반선인 ○○호(이하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2016. 7. 9. 20:20경 ○○도 주변 ○○4-○ 해구(○○포 약 20km)에서 본선으로부터 운반선 ○○호로 어획물(생선)을 옮기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선박 갑판에 설치된 하역 원치(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 레버로 원치를 조작하던 중 레버를 잡은 채 실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9. 23:00경 ○○대학교병원에서 전교통동맥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응급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받았고, 2016. 8. 17. ○○대학교 ○○○병원에서 뇌실 복강단락술을 받았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4.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승무중 직무외 질병으로 승인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근무하는 이 사건 선박 기관실의 업무환경은 ① 평소에도 기관의 소음이 심하고 기관의 열기로 인하여 통상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훨씬 높았고,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는 여름철로 다른 계절보다 소음이 심하고, 실내온도가 높았다.

2) 이 사건 선박의 잣은 입출항으로 인하여 기관실 작업이 빈번하였고, 기관장임에도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조업에 동원되거나 운반선에 어획물을 하역하는 작업에 동원되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198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호 등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뇌질환을 겪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난 것이다.

5)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선원등의 재해"란 어선원, 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이하 '어선원등'이라 한다)가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②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1. 승무경력증명서 기재와 같이 1980. 4. 29.부터 ○○호 등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2016. 5. 12.부터 2016. 7. 9.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의 업무내용은 ① 기관실 당직업무[주엔진 및 보조엔진을 점검하고, 기름 이적량을 확인하는 업무로서 3조(1조:기관사, 2조:조기장, 3조:기관장과 조기수) 교대 업무], ② 해상하역 업무(본선에서 운반선으로 어획물을 적재할 때에 의자에 앉아서 하역 원치 레버 조작 업무), ③ 항구 하역업무(항구에서 하역 작업을 할 때에 의자에 앉아서 하역 원치 레버 조작 업무), ④ 출항하기 전에 기름 적재 및 얼음 적재 업무, ⑤ 월명기(음력 보름 전후에 생선이 잘 안 잡히는 시기를 말한다)에 선박을 점검하는 당직 업무(외주를 통해서 수리 작업을 하는 것)인데, ○○수산에 입사한 2016. 4. 20.부터 2016. 7. 9.까지의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은 별지 2. 놋 · 심

혈관계 업무 조사표 기재와 같다(별지 2. 뇌·심혈관계 업무 조사표 중 2016. 5. 22. 해당 부분이 "7주"란과 "8주"란에 중복되어 있어 8주란에 기재된 부분은 삭제한다).

3) 이 사건 선박에서는 원고의 ①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과 수면장소(기관실 입구에 개인 침실)가 보장되어 있고, ② 수면시간의 자율조정은 불가능하다.

4)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이 2007년  $1\times0/90$ mmHg, 2008년  $1\times9/89$ mmHg, 2009년 내지 2011년 각  $1\times0/80$ mmHg, 2012년  $1\times0/90$ mmHg, 2013년  $1\times0/80$ mmHg 및 2014년  $1\times20/80$ mmHg으로 각 측정되었고, 2009년도부터 금주, 금연, 콜레스테롤 관리 및 경계치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라는 소견을 받았는데, 2015. 2. 12. 건강검진에서는 ① 음주가 위험 상태, 흡연이 경계 상태이고, ② 혈압이  $1\times0/93$ mmHg으로 위험 상태로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건강검진 대상)되고, 간장질환, 고혈압 의심되니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추가 검사 및 의사와 상담후 치료 바랍니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5) 원고는 2015. 5. 23. ○○의원에서 "양성 고혈압, 혈전증" 진단을 받아 고혈압약인 로디비카정 2.5/40밀리그램 등을 처방받았으나, 2006. 12. 13.부터 2016. 6. 20.까지 고혈압 약을 구매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갑 제4호증에는 위 진단내역만 기재되어 있다).

6) ○○대학교 ○○○병원 소속 ○○외과 의사가 2016. 9. 2. 작성한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의견(진단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장시간의 소음이 심한 곳에서의 밤샘작업이 많아 업무량의 강도 높았으며, 이는 혈압의 일중 변화차이 및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기 뇌출혈 유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7)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2007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

② 항고혈압 약물 등의 치료가 없는 고혈압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지만 고혈압 진단 후기에 접어들면서 혈압상승 횟수가 많아진다.

③ 혈압이 높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혈압 상승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항고혈압제 복용과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 혈압을 관리해야 한다.

④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혈압의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에 있어서 중요한 소인 인자로 작용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성 인자가 뇌동맥류(뇌혈관이 파리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것) 파열에 있어서 중요한 소인 인자로 작용하였다.

8) 뇌동맥류 파열의 소인 인자에 대한 임상적 분석(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첨부 서면)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고혈압은 뇌동맥류 파열에 중요한 소인 인자로서 뇌동맥류의 생성, 성장 및 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인자로 작용하고, 직업적 일을 하다 파열되는 빈도는 가을, 겨울에 비하여 봄, 여름에 높은데, 그 이유는 봄, 여름에 작업 양이 많고 낮 시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 길며, 작업시 기온이 높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9)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① 뇌동맥류 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인자가 있지만, 여자, 고령, 흡연자의 경우 그 발생빈도가 높고, 전체적인 발생빈도는 약 1~2%로 현재까지 한두 가지의 위험인자로 발생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② 동맥류 파열에 관하여는 인자 역시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동맥류의 모양 크기 등 해부학적 인자 역시 파열에 관여하기 때문에 한가지의 발병인자로 파열의 원인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③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 자발성 뇌출혈은 발병인자가 되는 환자의 기왕력 그리고 그러한 발생에 기여하는 촉발인자(과로 및 흥분 등)로 설명하고 있는데, 명확히 어느 정도의 촉발인자가 환자의 파열에 관여하였는지 의

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로의 경우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로 판단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단기적 만성적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일반적으로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경우, 모양과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매년 파열위험도(annual rupture risk)를 1~2% 정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과로가 없는 일반적인 성황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중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 이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다거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80. 4. 29.부터 근해 어선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여 야간 당직업무 및 여름철 해상에서의 당직업무, 하역 린치 레버 조작 업무 등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보인다.

나) 원고의 기관실 당직업무는 기관실에서 상주하는 업무가 아니라 주엔진 및 보조엔진 점검하고 기름 이적령 확인하는 3조 교대업무로서 기관장인 원고는 기관사, 조기장과 달리 조기사(외국인 선원)와 당직업무 시간 내의 당직업무를 분담할 수 있고, 원고의 어획물 하역 작업은 하역 린치 레버를 조작하는 업무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그 특성상 격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조업이나 하역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원고가 ○○수산에 입사한 2016. 4. 20. 이후 실제로 근무한 시간(수면 및 휴식시간 제외)은 ① 2016. 5. 1.부터 2016. 5. 8.까지 8일간 64시간 당직근무(기관실 수리), ② 2016. 5. 24.부터 2016. 5. 28.까지 5일간 40.4시간, ③ 2016. 5. 29.부터 2016. 6. 4.까지 7일간 41.9시간, ④ 2016. 6. 5.부터 2016. 6. 11.까지 7일간 37.8시간, ⑤ 2016. 6. 12.부터 2016. 6. 16.까지 5일간 25.5시간, ⑥ 2016. 6. 21.부터 2016. 6. 24.까지 4일간 10.5시간, ⑦ 2016. 6. 27.부터 2016. 7. 2.까지 6일간 24.7시간, ⑧ 2016. 7. 3.부터 2016. 7. 9.까지 7일간 38.3시간으로서 일 평균 근무시간은 5.8시간 정도이다.

원고가 2016. 6. 27.부터 이 사건 상병 당일인 2016. 7. 19.까지 중 ① 낮(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당직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2016. 6. 27., 2016. 7. 2., 2016. 7. 5. 및 2016. 7. 9.으로서 4일이고, ② 심야(23:00부터 06:00까지)에 당직업무 또는 해상하역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2016. 6. 29., 2016. 6. 30., 2016. 7. 3.,

2016. 7. 4., 2016. 7. 5., , 2016. 7. 6., 2016. 7. 7., 및 2016. 7. 9.으로서 8일이다.

원고는 2016. 6. 27.부터 2016. 7. 2.까지 13일간 휴일 없이 근무하였으나 그 전인 2016. 6. 25. 및 2016. 6. 26. 이틀간 휴업하였고, 원고가 ○○수산에 입사한 2016. 4. 20.부터 이 사건 상병 당일인 2016. 7. 9.까지 81일 중 32일을 휴업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 당시는 2016. 7. 9. 저녁 8시 20경으로서 2016. 7. 9. ○○ ○○○시의 기온은 최저 22도, 최고 29도이고, 이미 해가 진 저녁이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무덥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선박 갑판에서 의자에 앉아 하역 린치의 레버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마)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당시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어 원고에게 업무형태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원고가 확인한 뇌·심혈관계 재해조사시트(을 제2호증)에도 일상업무량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변동이나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노동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진술을 기재한 문답서(을 제2호증의 1)에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역 원치 잡는 곳에 열기도 좀 뜨거웠고 그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무더운 여름 날씨나 뜨거운 열기는 ○○ 어선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만 특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문답서에는 '인원이 부족한 경우도 없었고, 업무과중 여부 무(無)'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의 뇌동맥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늦어도 2007년경부터 뇌동맥류의 생성, 성장 및 파열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 ○○대학교 ○○○백병원의 진단(장시간 소음이 심한 곳에서의 밤샘작업이 많아 업무량의 강도가 높았고, 이로 인하여 혈압의 일중 변화 차이 및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은 원고의 업무량의 강도가 높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업무내용을 알지 못한 채 내려진 진단으로 보이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그 첨부 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고혈압과 스트레스성 인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는 일반적인 의견으로 보인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에 2007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은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원고와 같이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은 항고혈압제 복용 등으로 고혈압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단기적 혹은 만성적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